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정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2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유정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
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
박춘선, 옥재은, 이새날,
이숙자, 이종태, 임춘대,
최유희, 허 훈, 황유정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,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학교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, 의회 의견청취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과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고(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),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가함(안 제11조제1항제11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제1항 각 호”를 “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”로 한다.

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
11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변경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	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
①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
<u><신 설></u>	11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 중 공공공지를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 치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변경
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 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② ----- ----- -----

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--

--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 제1항 제10호를 신설함으로써 경미한 정비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	☎ 02-2180-7952
	e-mail : hongl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